

광둥에서 대기업 조세사전결정 시범 시행, 대만구(大湾区) 고품질 발전 지원

2026.08

Issue 8

개요

2026년 7월 31일, 국가세무총국 광둥성 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 광둥성 세무국의 대기업 조세사전결정 업무 관리방법(시행)》¹(월세판발[2026]34호, 이하 “방법”이라 함)을 발표했으며, 발표일로부터 시행됩니다. 방법은 광둥의 대기업들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잡한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세 비용과 잠재적 위험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대만구(大湾区, Great Bay Area)의 조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 조치로서, 방법이 발표됨으로써 기업의 광둥 내 중요 투자, 자산 재조정 등 비즈니스 거래에 보다 명확한 조세 확실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전에 북경, 상해, 복건 등 지역에서도 사전결정 관련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분석과 실무 사례는 PwC의 과거 Newsflash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²

상세 내용

발표 배경

조세사전결정은 세무기관이 세무 관련 사항 발생 전 신청에 따라 납세인에게 세법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약정으로, 세법의 확실성 강화 및 사후 세무국과 기업 간 분쟁 감소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2021 년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이 《세수징수관리 개혁의 추가 심화에 관한 의견》에서 “대기업 조세사전결정을 모색하고 시행하며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할 것”을 제시한 이후, 북경, 상해 등 지역은 잇따라 성(省)급 업무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둥 여러 지역의 도시에서도 사전결정 분야에서 적극적인 선행 모색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2020 년 광저우 남사구의 초기 시범 시행, 2021 년 광저우와 심천의 공동 국제조세사항 사전결정, 2022 년 광저우가 도입한 “국제조세사항 확실성 서비스”, 2024 년 및 2025 년 마오밍시와 광저우시 세무국이 각각 발표했던 공식 사전결정 업무 매커니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기업의 자산 재조정, 지분 거래 및 신규 사업 모델에 따른 세무 관련 사항이 날로 복잡해지면서, 기업은 조세 정책의 확실성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법의 발표는 광둥성 대기업 조세사전결정이 초기 시(市)급 시범 시행 모색 단계에서부터 전 성(省) 통일 규범 운영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적용 범위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방법은 광둥 내(심천 제외, 이하 동일)에 본사를 둔 “천호집단(千户集团, 연간 납세액이 국가세무총국 관리서비스 표준에 도달한 기업그룹)”과 광둥성급 및 각 지역도시급 선정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서, 천호집단 광둥 내 본사와 성급 선정 대기업은 **성급 세무국 또는 시급 세무국**에 신청하고, 시급 선정 대기업은 소속 지역의 **시급 세무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PwC의 관찰

광둥은 신청 범위를 천호집단과 선정 대기업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실무 레벨의 징수관리 자원을 결합하여 중요하고 복잡·난해한 거래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실무상 고려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납세인이 비거주자기업이면서 광둥성 내 대기업의 복잡한 국경 간 사항과 관련된 경우, 예컨대 광둥성 대기업의 국경 간 구조조정, 경외 간접 지분양도, 광둥성 대기업이 배당 지급 시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여부 판정 등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사전결정 매커니즘을 통해 확실성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심천은 조세관할권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본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방법은 세목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업의 일반 기업소득세, 증치세, 인화세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해 모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적용 사항과 관련하여, 결정을 신청하는 거래는 반드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합법적인 상업 활동에 기반해야 합니다. 정책 적용의 접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방법은 조세사전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네거티브 사항 리스트”를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거티브 사항 리스트	PwC의 관찰
1) 확정된 승인 계획이 없거나 2년 이내 발생하지 않을 사항	이는 기업이 2년 내 추진 계획이 명확한 거래에 대해 사전결정을 신청하고 세무처리를 명확히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승인 지원이 없는 장기 계획은 통상적으로 접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방법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무 관련 사항이 이미 실제로 발생했다면 결정 절차가 법에 의해 중단될 것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비즈니스 협상과 거래 실행의 선을 잘 조율하고 계획하여 거래가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전에 신청 및 심사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2)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없거나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상 명확히 금지된 사항	기업의 거래 계획은 조세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거나 국가에서 명확히 금지한 사업에 속한 경우, 사전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여러가지 거래 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이나 순차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동일 사항 등 Tax planning 행위	사전결정의 핵심은 기존의 확정된 실제 거래에 대한 정책 해석이지, 기업이 다른 방안에 따른 세부담 금액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기업이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단일하고 명확한 실행 방안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현행 세법 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있고 관련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현행 세법 규정에 규정이 없어 조세 입법이 필요한 사항, 또는 순수한 이론적 문제	예를 들자면, 특정 거래의 세법 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의해 직접 시행하면 되며, 이는 사전결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첨단 신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현행 세법상 규정이 없으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 또한 사전결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결정은 현행 조세 정책의 체계하에 거래 적용 세무처리에 대한 해석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5) 납세평가, 세무감사, 위험통제 검사, 조세회피방지,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사항	사전결정은 사전 예방 성격의 납세 서비스에 해당하며, 기업이 세무기관이 수행 중인 세무조사, 위험통제 또는 검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6) 미해결 행정부의(行政复议),	관련 사항이 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았다면 행정 구제 또는 사법판결과

이의제기), 중재, 소송 또는 해외 법률 해석 관련 사항	상충되지 않기 위해 사전결정을 다시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세무기관은 중국 현행 세법의 적용에 의견을 제시할 뿐이며, 해외 법률을 해석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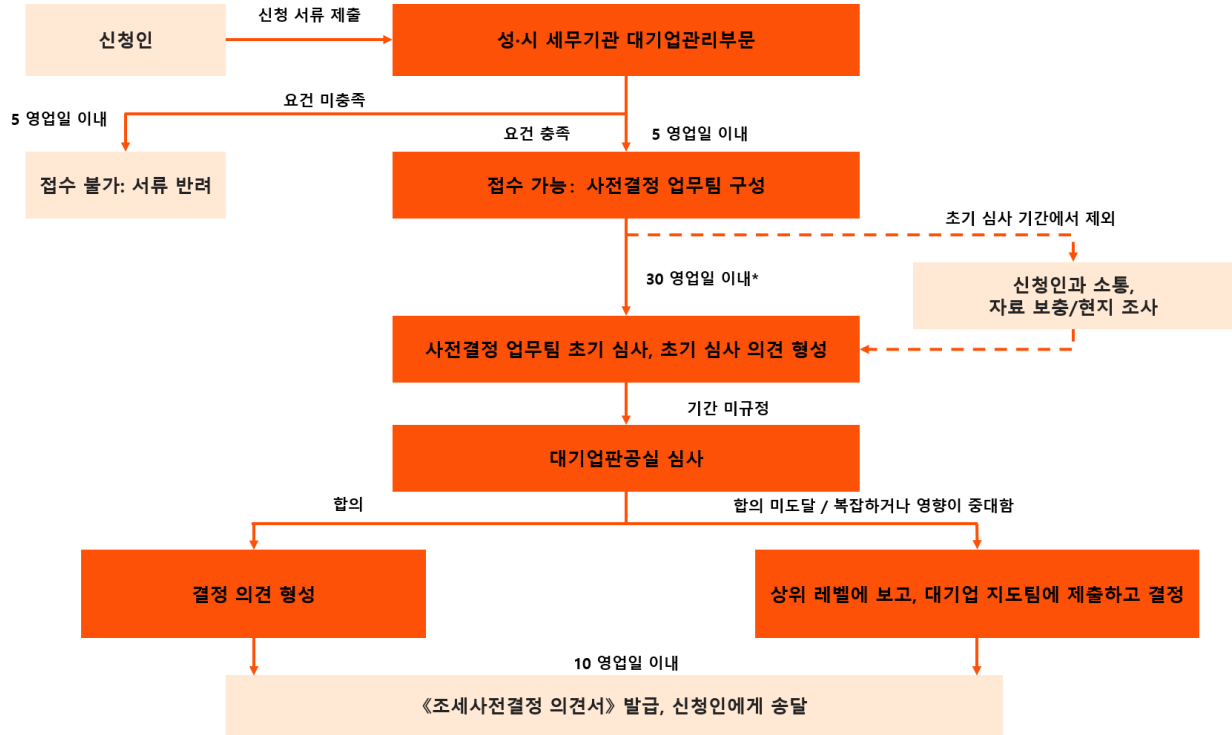
사전결정의 신청, 접수, 심사 및 결정

사전결정은 성급 또는 시급 세무기관 대기업 조세서비스 및 관리부문이 해당 레벨의 대기업 조세업무 지도팀 판공실(이하 “대기업판공실”이라 함)을 대표하여 총괄하고 처리합니다.

절차: 대기업부문은 납세인의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5 영업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접수를 결정한 경우, 대기업부문이 대기업판공실의 관련 업무 부문과 관할 세무기관을 소집하여 업무팀을 구성하며, 30 영업일 이내에 초기 심사 의견을 형성합니다. 심사 기간 동안 기업에 자료 보충 또는 현장 조사를 요청하게 되면, 기업의 자료 보충 기간은 초기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하고 중대·난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레벨의 대기업판공실이 승인하면 처리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심사 의견이 형성된 후 대기업판공실에 제출하여 단체 심사를 받습니다. 각 부문이 모두 합의한 경우 직접 결정 의견을 형성합니다. 이견이 있거나 상황이 중대하고 복잡한 경우, 상위 레벨에 보고한 후 대기업조세업무지도팀에 제출하여 승인하고 결정합니다. 세무기관은 결정 의견이 형성된 후 10 영업일 이내에 기업에 《조세사전결정 의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주로 《조세사전결정 신청서》, 《조세사전결정 서비스 신청 성명서》, 구체적인 상업적 실행 방안, 계약협약, 타당성 검토보고서, 이사회 결의, 승인 문서, 각 부문의 재무회계 처리 자료, 그리고 관련 부문·단위가 발급한 법률·세무 자문 의견(있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광동 대기업 조세사전결정의 업무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 상황이 매우 복잡하거나 영향이 증대한 특수 상황일 경우, 해당 레벨의 대기업판공실이 승인한 후 초기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PwC의 관찰

처리 및 감독 매커니즘과 관련하여, 광둥에서는 성·시 두 레벨 접수, “접수한 측에서 결정도 함”과 “지방 시급 세무기관이 한 결정을 성급 대기업판공실에 보고 및 등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방 시급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면서도 성급 세무기관 대기업판공실의 총괄 및 관리를 통해 성 전체의 조세 정책 적용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요건 및 절차 보호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부속 서식은 납세인 기본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사항이 비교적 상세합니다. 신청인은 《조세사전결정 신청서》에 결정 신청 사항, 기업 자체의 견해 및 세무 처리 의견, 적용되는 조세정책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즉, 결정의 전제조건은 신청인이 해당 사항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세무 분석을 이미 수행했다는 점이며, 이는 세무기관이 결정 사항에 대한 세무 판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방법은 결정 절차가 부득이한 사유로 종료될 경우 모든 신청 자료를 반려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및 내부 의사결정 자료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세사전결정의 집행 및 후속 관리

방법에 첨부된 《조세사전결정 의견서》에 따르면, 결정 의견은 지도적 성격의 납세 서비스에 해당하며 강제 집행력이 없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결정 의견의 유효성은 엄격한 사실 일치성을 전제로 합니다.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포괄적이어야 하고, 향후 실제로 발생하는 상업적 행위는 신청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근거가 되는 세법 규정에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실제 거래가 신청 방안과 달라지거나, 결정 의견에 따라

세무 처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세법 규정이 개정·폐지되거나, 새로 제정된 조세 문서로 인해 결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전결정 의견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후속 관리 단계에서 관할 세무기관은 납세인의 실제 경영 및 신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합니다. 아울러, 방법에 첨부된 《조세사전결정 서비스 신청 성명서》는 기업이 결정 의견을 받은 후 신청 사항이 더 이상 이행되지 않거나,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관할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PwC의 관찰

방법은 사전결정이 세무기관 및 납세인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세법 체계 하에서 사전결정은 세무기관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책 적용 지도 및 맞춤형 납세 서비스 조치에 해당하며, 납세인의 권리와 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 집행력이 없습니다.

다만, 《조세사전결정 의견서》는 세무기관이 공식적으로 발급하고 날인한 문서이며, 방법에서는 그 효력 발생의 전제와 추적 관리 매커니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관련 사실을 성실하게 공개하고 향후 실제 발생하는 상업적 거래가 신청 자료와 일치하기만 한다면, 해당 결정 의견을 신뢰할 수 있으며 납세 신고의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광동의 조세사전결정 방법은 대기업을 대해 조세 정책 확실성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세무 위험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인수합병, 중요 자산 처분이 빈번하거나 신규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자 하는 대기업 그룹에 대해서는 호재가 됩니다.

맞춤형 납세 서비스로서 사전결정 사항은 통상적으로 복잡하며, 세무기관 내부 부서간 심의 및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전 과정은 통상적으로 수개월 심지어 반년이 필요합니다. 사전결정이 2년 내 명확한 계획이 있는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한 세무 관련 사항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실제로 발생했다면 절차가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초기에 심도 있는 업무 및 재세 분석을 수행하고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단일하고 명확한 비즈니스 방안을 결정하며

후속 세무국과의 소통, 결정 발급 및 실제 거래 구현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신청할 의향이 있다면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만구의 활발한 발전에 따라, 대만구 내에서 지역을 넘나들며 경영하는 기업들은 향후 광둥이 주변 성·시와 함께 조세사전결정 협업을 더욱 추진하고, “한 번의 신청, 여러 지역의 인정”을 모색·실현하여, 지역 간 경영하는 기업에게 보다 통일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을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석

1. 《국가세무총국 광둥성 세무국의 〈국가세무총국 광둥성 세무국 대기업 조세사전결정 업무관리방법 (시행)〉 발표에 관한 통지》(월세판발[2026]34 호)

https://guangdong.chinatax.gov.cn/gdsw/yhyshjzt2024_zcwj_tssjxl/2026-08/05/content_42149acbcd3a447ca3c0b4dcbb14f7b4.shtml

2. PwC Newsflash 2022 Issue 20: 《각지 지역간 조세사전결정 모색, 국가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지원》

https://mp.weixin.qq.com/s/wCVexiOSbEehp_ct2JneNg

PwC Newsflash 2024 Issue 1: 《2024 조세정책 중요 혁신 해설: 상하이 조세사전결정 시범 시행, 조세 확실성 향상》

<https://mp.weixin.qq.com/s/nvFZaB2Z3QDut2cs3OGgrA>

PwC Newsflash 2024 Issue 11: 《베이징 조세사전결정 시범 시행, 조세 비즈니스 환경 개선》

<https://mp.weixin.qq.com/s/TWW-l9IzQwgg6eFU0dQfOw>

PwC Newsflash 2024 Issue 16: 《사례에 기반한 혁신 모색 — PwC, 복건성 최초의 국제조세 사전결정 타결 지원》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4q3/chinatax-news-aug2024-16.pdf>

PwC Newsflash 2025 Issue 13: 《상하이 조세사전결정 “시범 시행에서 공식 시행으로 전환”: 2025 년
신규 방법 해설》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5q4/chinatax-news-nov2025-13.pdf>

CONTACT LIST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Newsflash(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新知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6 年 8 月 27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2026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